

2018. 9.3제정
2019. 3.16개정

「급여하나 통장」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급여하나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5조 이자지급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셈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②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전환후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6조 청년 직장인 우대금리

① 이 예금 가입고객 중 만35세 이하 고객이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급여^(주1)가 입금되는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4%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② 우대금리는 해당 고객이 만35세 초과후 첫번째 도래하는 결산시까지 제공됩니다.

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항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1. 급여하나 우대 : 이 예금에 급여 입금^(주1)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 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5회 제공

2. 급여플러스 우대 : 이 예금에 급여 입금^(주1) 및 주거라이체실적^(주2) 1건 이상 충족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 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10회 제공

(주1) 급여 인정 기준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2) 주거래이체실적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본인명의 연금상품 이체(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아파트관리비 출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대금(신용,체크),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공과금 출금,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3.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I 총합 월10회 제공

(수수료우대 I)

-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수수료우대 II)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수수료 면제^(주3)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주3)타행은CD기공동망참여금융회사로, 타행점내설치된자동화기기에한하며, 은행외부에설치된
타행제휴CD기및한컴/효성/나이스등VAN사CD기에서출금하는경우는수수료면제가제공되지않음.

② 이 예금 신규 가입후 다음달까지는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를 총합 월10회 제공합니다.
. 단, 가입월에 제7조 제1항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후 다음달부터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적용합니다.

③다른수수료면제통장에서이예금으로전환시,전환하는달의수수료면제횟수는기존상품의수수료
면제잔여횟수를적용하고, 익월부터이예금의수수료우대서비스요건에따른면제혜택을제공합니다.

제8조 직장인 응원 서비스

이 예금 가입고객이 직장인 응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월 총5회)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하는 달까지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휴직(육아, 인병) 또는 퇴직한 고객이 사유 발생월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예금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입금실적^(주1)을 보유한 경우
- 신청방법 : 휴직/퇴직후 3개월이내 영업점 창구를 통하여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예시) : 육아휴직 및 인병휴직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제9조 상품전환

저축예금인 경우,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 칙

1.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